

말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

# 알기 쉬운 재산신고 요령



# 알기 쉬운 재산신고 요령

## 1.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

## 2. 신고서 작성시 자주하는 실수사례

## 3. 신고서 작성요령

3-1. 작성방법 요약

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3-3. 용어의 이해

# 1.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

## 1.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

### ☐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조기제출 협조

- ▶ '15.2.15~2.28 신고기간중에는 등록의무자의 과다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제출불편이 예상되오니, **정기 재산변동신고를 '15.2.15까지 조기 완료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☐ 재산 신고시 유의사항(해당자에 한함)

- ▶ 등록의무자의 이전 신고서 심사결과 다음 재산신고시 유의하여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윤리업무담당자가 메모한 경우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. 등록의무자는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금번 신고시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▶ 재산신고시 유의사항

종교활동의 이전 재산신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오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.  
금번 신고서 작성시 미흡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2014년 의무자 본인 계좌계주 사항 반영
  - 간사 주소를 기재하고 건물명세, 전세임을 열거(예: 대우아파트, 전세)
-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도원동 소재 아파트의 열거 설명
  - 전도원1차주거지오아파트 -> 전도원3차주거지오아파트
- 2014년적 차원의 공동소유 정보 반영
  - 본인 보유 부동산과 차양지역 등 부동산을 포함한 신고

닫기

## 1.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

###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(해당자에 한함)

- ▶ 등록의무자 친족의 고지거부 허가기간(3년)이 도래해 재심사를 신청해야하는 경우 보여지는 메시지가장입니다. 고지거부 대상과 허가기간을 확인한 후 신청기한 내 재심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▶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안내

귀하께서는 2015년4월 고지거부 신청을 한 후 3년짜기 되는 것입니다.  
고지거부 기간이 만료된 후 2달 이내로 신청하시거나 2달 이내로 신청하지 주시게 됩니다.

#### 고지거부 허가신청 안내

■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대상 항목에 비준 고지거부 허가기간  
- 종국결(부) : 2012.03.13 ~ 2015.02.28

닫기

### 재산변동사항 및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재

- ▶ **신규재산의 경우 취득일, 취득경위, 자금원 등을 상세히 기재**하고, 예금, 채무 등 기존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기재합니다.
- ▶ 본인 및 본인 외 소득을 변동요약서에 기재하고, 소득대비 재산 증감폭이 큰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합니다.

## 1.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

### ☐ 정기변동신고서 수정

- ▶ 신고기간 중(15.1.1~2.28)에는 신고서 제출 후에도 수정 가능합니다.
  - ※ 신고서 수정 및 저장 → 제출 → 접수증(제출확인서) 출력 보관
  - ※ 수정저장 후 [제출]완료 하지 않으면 미제출 처리됩니다.
- ▶ 신고기간 마감일 후에는 10일간 해당 등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고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.  
(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)

### ☐ 사실상 소유 및 명의상 재산의 신고

- ▶ 공부상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**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신고하여야 합니다.**
  - ※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속·증여 재산, 무허가 주택 등
- ▶ **실제 본인 재산이 아니나,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신고합니다.**
  - ※ 종중재산, 동창회비(친목회비) 예금계좌 등

### ☐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(공시적 가격)으로 신고

- ▶ 기존 등록재산은 거래가 없더라도 평가가액 등이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  
- 다만, 14년도 중 신규로 취득 또는 매도한 부동산은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되,  
취득(매도)일·자금원·취득(매도) 경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합니다.

## 1.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

## 금용정보 제공 자료를 활용한 재산신고(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)

- ▶ 제공되는 자료는 자동 입력되지 않으므로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이전 신고자료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  
※ '15.1.21(수)부터 금융정보활용입력 가능

## ⚠ 등록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및 검증 실시('15.1.15 ~ 1.20) 안내

- 금융기관에서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등록의무자가 직접 확인하여 누락 및 오류 여부를 검증
- 검증기간 내에 누락 및 오류 등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재회신이 될 수 있도록 요청
  - 금융정보 확인요령 : 재산등록의무자용 P21i에 접속하여 총괄표 상단좌측에 "금융정보알람"을 클릭하여 금융정보 확인 및 검증
  - 금융기관 연락처 확인요령 : "금융정보알람" 화면 하단우측에 "금융기관 회신현황"을 클릭하면 금융기관 연락처 검색가능

## 2. 신고서 작성시 자주하는 실수사례

## 2. 신고서 작성시 자주하는 실수사례

- ▶ 등록기준일('14. 12. 31)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나, 신고서 작성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함
- ▶ 친족의 고지거부 허가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신규 고지거부 허가 없이 친족의 재산을 누락함
- ▶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나, 본인 등 공동명의로 '문중재산', 본인 명의의 친목(동창)회비 등 예금계좌를 누락함
- ▶ 전세권을 건물 항목에 신고하여야 하나, 누락하거나 채권항목에 잘못 신고함
- ▶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하여야 하나, 누락함
- ▶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'소유권 상실'에, 예금·보험 등을 해약한 경우 '해약'에 체크를 하여야 하나, 현 가격만 '0'으로 처리함
- ▶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는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,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누락함

## 2. 신고서 작성시 자주하는 실수사례

- ❶ 자동차보험, 화재보험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신고하여야 하나, 그 외 보험을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누락함
- ❷ 교직원공제회, 지방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는 예금을 누락함  
(단,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(기여금 형태) 등 공적연금은 제외)
- ❸ 아파트 등 건물의 소유자가 **부부 공동명義인 경우 각각 해당 지분만큼 신고**해야 하나, 합산하여 남편(또는 아내)의 단독 소유로 신고 하는 경우  
※ 아파트는 건물가액만 신고(대지 제외), 상가·빌딩·오피스텔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

⚠ **공직자윤리법 제8조약(심사결과)의 처리**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경고 및 시정조치
2.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
3.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
4. 해임 또는 징계(파면을 포함한다) 의결 요청

## 3. 신고서 작성요령

3-1. 작성방법 요약

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3-3. 용어의이해

### 3-1. 작성방법 요약

| 작성순서      | 신고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신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본인정보 수정 | 소속, 직급, 직위, 주소, 연락처 등            | ▶ 해당사항을 등록기준일 <b>현재</b> 상태로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친족정보 수정 | 친족의 신상정보, 고지거부, 등록대상, 직업, 거주형태 등 | ▶ 해당사항을 등록기준일 <b>현재</b> 상태로 수정 및 신규추가<br>※ 사망한 친족, 결혼한 딸은 등록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총괄표 작성  | 부동산(토지·건물)                       | ▶ 매매·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, 분할합병·증속·계속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, 공시가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사항을 신고<br>▶ 임차권(전세, 월세(보증금 有))은 '건물' > '전세권'으로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자동차·건설기계·선박, 광업권·어업권 등           | ▶ 자동차는 매매시 실거래가격, 보유시 자동차 보험의 차량기준가액으로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예금·보험·증권·사인간 채권·채무 등             | ▶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<br>▶ 마이니스트통장의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이 '0'이면 '예금'란에, '-'이면 '채무' 항목에 신고<br>▶ 투자신탁수익증권(펀드 등)은 예금항목에 신고<br>▶ 임대(전·월세)보증금은 '채무' > '건물임대채무'에 신고 |
|           | 금·백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<br>▶ 매입한 경우는 매입가격, 매도한 경우는 매도가격으로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3-1. 작성방법 요약

| 작성순서      | 신고항목               | 주요신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③총괄표 작성   | 보석·골동품 및 예술품       | ▶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회원권                | ▶ 골프, 헬스, 콘도미니엄 등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은 모두 신고<br>▶ 골프회원권은 계속 보유시 자치단체(세무과 등)에 시가표준액을 문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<br>▶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 |
|           | 자식재산권              | ▶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합명·합자·유한회사<br>출자지분 | ▶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        | ▶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변동요약서   | 재산변동사유, 총소득        | ▶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기재<br>▶ 본인소득 및 본인외 소득자수·소득금액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⑤ 공개목록 작성 | 재산공개자에 한함          | ▶ <b>개인정보 관련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작성 주의</b><br>▶ 토지인 경우 지목(임야, 담 등)과 지번을 기재하고, 건물인 경우 종류 및 용도(주택, 아파트, 상가 등)를 기재하여 지번과 동·호수 기재 생략            |
| ⑥ 신고서 제출  | 재산신고 항목 최종 확인      | ▶ 재산변동신고서,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<br>※ 반드시 [제출]버튼을 클릭하고, 미클릭시 미제출로 처리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화면구성

|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화면구성 | 본인정보수정 | 친족정보수정 | 친족추가 | 총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환용입력 |
| 예금보철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

### 03 총괄표작성



#### ① 유의사항

- ※ 금융정보 의무자 사전검증기간: 1.15.~1.25. (삼일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)
- ※ 금융 및 부동산정보 열람매출: 1.15.~2.25. (부동산은 열람정보를 출력하여 직접 등록)
- ※ 금융정보 활용입력: 1.21.~2.25.

#### ② 작성방법

- ※ 모든 정보는 등록기관인 2014년 12월 31일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종전 신고항목을 선택하여 변동사항(증감, 상실, 현행없음 등)을 신고합니다.
- ※ 표시가 있는 항목은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입니다.
- ※ - + 를 클릭하면 신고항목 목록을 열기, 닫기 할 수 있습니다.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본인정보수정

본인정보수정

주소알뜰변경

|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회원구성 | 본인정보수정 | 친족정보수정 | 친족추가 | 종교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활용입력 |
| 예금보혈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유의사항

- 등록의무자의 소속, 직위, 직급, 주소, 연락처 등을 **등록기준일('14.12.31) 현재**의 상태로 수정합니다.
- 거주자가 관사 등인 경우 **자택주소**의 건물명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. (예 : 보람아파트(관사)등)

#### 신고요령

- 직급, 자택주소, 직장주소 등의 (\*)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 수정바랍니다.
- 한자이름 입력시 변환할 글자를 선택한 후, 키보드의 한자키를 이용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- 자택주소와 직장주소는 이전입력주소를 확인하고 잘못 입력하였거나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, 도로명주소찾기를 통해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.  
(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 지번 또는 기타(국가보안시설 근무자 등)를 선택 후 직접 입력)
- 전입·전출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을 변경합니다.

#### ① 친족주소 알뜰변경 알림 기능

| 기능 |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확인 | 변경 전 주소로 등록된 친족의 주소도 알뜰 변경 실행                |
| 취소 | 본인의 자택 주소만 변경하고, 등록된 친족의 주소는 '친족정보수정'에서 직접변경 |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상세보기

#### 01 본인정보수정

신고요령

FAQ

#### 본인정보

★ 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.

※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4년 12월 31일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성명     | 한글: 홍길동 / 한자: 洪吉洞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주민등록번호 | 580101-11100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★ 직급   | 과장(4급 상당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직위     | 관리담당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※ 예: 윤리책임관, 윤리담당관           |  |
| 소속     | 대표소속: 인천법정부    상세소속: 관건법정부 윤리책임관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red; padding: 2px;">1</span><br>※ 2014.12.31.자 퇴권, 교복 등으로 상세 소속이 없을 경우 공란 처리 하십시오.<br>※ 대표소속이 변경된(전 종립) 경우는 해당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소속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★ 자택주소 | 도/광역시/군 구/시/읍/면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red; padding: 2px;">2</span> 110-061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red; padding: 2px;">도로명 주소</span><br>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2    1동    1호    (신분표17가, 신분표별당)   | ※ 해외거주자일 경우 국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 |  |

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□ 친족정보수정

🔍 화면보기

| 회원구성 | 본인정보수정 | 친족정보수정 | 친족추가 | 종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활용입력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혈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□ 유의사항

- 친족(등록이무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)의 주소, 직업 등을 **등록기준일('14.12.31)현재의 상태로 수정** 및 신규 추가합니다.
-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'변동사유'란에 그 권리의 종류 및 거주형태를 반드시 기재합니다.(예 : 관사, 가옥사, 친척집, 사글세 등)
- 친족현황에 등록되지 않은 친족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, 미등록친족에 보여지며 '미등록 친족추가'를 통해 친족현황에 등록합니다.

#### □ 신고요령

- 친족현황 확인 후 변동이 있는 친족을 클릭해서 주소나 직업, 등록대상 상태를 수정합니다.
- 사망한 친족이나 결혼한 딸은 등록제외에 (✓) 표시합니다.
- 이혼한 딸의 경우 등록대상이므로 친족에 등록합니다.
- 직계존속(부모)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, {부(시부)/모(시모)} 란에 반드시 체크합니다.
-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, {이혼/미혼/사별} 란에 반드시 체크합니다.
- 등록한 자녀가 없는 경우, '등록대상 자녀 없음' 을 반드시 체크합니다.  
※ '등록대상 자녀없음' (✓)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단계로 진행불가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상세보기



## 02 친족정보수정

신고요령

FAQ

### 친족현황

※ 친족 구성원의 변동사항 발생시, 친족현황 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 ※ 고지거부 신청할 친족이 있는 경우 해당 친족을 체크한 후 고지거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고지거부신청

친족추가

| 관계  | 성명 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리형태 | 직업         | 고지거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록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록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동사유   |
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배우자 | 김미숙 | 600501-2230001 |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379-31 (고덕동)                   | 자가   | 가정주부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일괄변경 |
| 부   | 홍국영 | 450501-1230001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09길 21, 333동 333호 (개포동, 대성아파트)  | 자가   | 공직병원 의사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일괄변경 |
| 모   | 김미자 | 500501-2230001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34가길 8-28 (신길동)                 | 자가   | 무직     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일괄변경 |
| 장남  | 홍영식 | 850501-1230001 |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379-119, 110동 110호 (고덕동, 건명복합) |      | 회사원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장녀  | 홍영희 | 870501-2230001 |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379-31 (고덕동)                   | 자가   | 공직소통학 교 교사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혼인     |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친족추가

화면보기

|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회원구성 | 본인정보수정 | 권속정보수정 | 친족추가 | 종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환용입력 |
| 예금보혈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유의사항

- 친족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다.

① 실명인증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단계 진행불가

| 인증결과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확인   | 실명인증 성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50501 - ***** 실명인증 인증성공     |
| 오류   |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<br>(외국인 포함) | 850501 - ***** 실명인증 실명오류     |
|      |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                 | 850501 - ***** 실명인증 주민등록번호오류 |

①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

-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: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'주민등록번호오류'가 발생하더라도 정확히 입력하였다면 저장하고 다음으로 진행
-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: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에 체크(✓) 후 생년월일만 입력  
[예시] 76.12.5생의 남자의 경우 '761205-1000000' 으로 등록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 상세보기



## 친족추가

## ① 유의사항

★ 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

※ 모든 정보는 등록개요일인 2014년 12월 31일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
신고요령

FAQ

## 기본정보

★ 관계

자녀

★ 성명

홍철기

★ 주민등록번호

☐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

901212 - 1230005

1  
보장 소용 - 인증성공

※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-0000000으로 등록바랍니다.

예: 1980.08.14.인 재외국민 자녀는 900814-0000000으로 등록

## 추가정보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☐ 총괄표작성

🔍 미리보기

| 회면구성 | 본인정보수경 | 권속정보수경 | 친족추가 | 총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활용입력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월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☐ 유의사항

- 신고된 재산을 변동 또는 삭제하는 경우 해당 재산항목을 클릭합니다.
- 미리보기는 해당 재산항목을, 전체 미리보기는 모든 재산항목을 법정사식에 맞추어 출력할 수 있습니다.
- **재산항목별 신규 재산 추가는 우측 [추가]버튼 클릭하여 추가 가능합니다.**
- 종전 신고항목을 선택하여 변동사항(증감, 상실, 변동없음)을 신고합니다.  
※ ❶ 표시가 있는 항목은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입니다.

#### ☐ 부동산 정보열람

- 동의를 제출한 등록의무자 및 친족(고지거부자 제외)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보여주며, **조회내역을 출력하면 재산 입력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**
- 열람기록을 클릭하면 등록의무자가 부동산정보내역을 열람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건물정보의 경우 "지방세 과세"자료를 활용하는 관계로 현 보유 정보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더보기 >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상세보기

#### ▶ 부동산정보내역

#### 1 유의사항

- ▶ **동맥역부자(신속포함)에 부동산에 대한 조회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나 재산신고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**
  - 부동산정보는 해당 물건지의 보유에 대한 이력정보로서 신고기준일자에 소유권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.
  - 특히, 건물 보유정보는 지방세과에 정보를 기초로 제공되는 관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아래 확인 방법에 따라 직접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  - 정보제공 동의서 미제출자, 고지거부허가자의 부동산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
#### ▶ 부동산정보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방법

- **대법원판례넷등기소**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물건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**비로그기**
- **민원24**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물건지의 토지(일대)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**비로그기**

#### 2 부동산 보유 정보에 대한 조회결과

##### 1. 토지 보유 정보

| 소유자성명 | 조회기준일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| 지목 | 면적(m <sup>2</sup> ) | 공유자수 | 연등일        | 연동사유 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홍길*   | 2014-12-31 |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이오리 10번지    | 임야 | 5,000.00            |      | 2009-07-01 | 소유권이전 |
| 홍길*   | 2014-12-31 |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2090번지 | 대  | 499.00              |      | 2009-07-01 | 소유권이전 |

##### 2. 건물 보유 정보(주거/비주거용 포함)

※ 면적정보는 등기부등본상에 면적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☐ 총괄표작성

🔄 화면보기

| 화면구성 | 본인정보수경 | 권속정보수경 | 친족추가 | 총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활용입력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혈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☐ 금융 정보열람

- 동의를 제출한 등록의무자 및 친족(고지거부자 제외)의 금융정보 보유내역을 보여주며, **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입력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**  
※ 금융정보활용입력에 표시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출력하여 신고 시 참고
- 금융기관현황을 클릭하면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열람기록을 클릭하면 등록의무자가 **금융정보 내역을 열람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**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상세보기

#### ▶ 금융정보내역

##### 1. 유역사항

- ① 1.15. ~ 1.20.까지 자료누락 등 공문 회신일 경우는 각 금융기관으로 연락하여 재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 
- 각 금융기관 연락처는 [금융기관연락처](#)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- ② 금융정보는 원고자로서 사실여부에 최종적인 확인 및 책임을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 
- 금융정보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누락될 수 있으며 목록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금, 증권, 채무 및 채권이 있다면 반드시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.  
- 정보제공 동의서 미제출자, 고지거부허가자의 금융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  
[※ 성실의 금융기관 목록정보와 다른경우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](#)

##### 2. 금융기관계금자료

1. 예금(은행 · 영업보험 · 손해보험 · 상호저축은행 · 종합금융) 등 정보  
※ 예금잔액은 해당항목에 신고하고 대출잔액은 채무항목에 신고하기 바랍니다.

| 소유자성명 | 조회일기준      | 금융기관명  | 계좌번호             | 예금(상환)종류 | 예금잔액(천원) | 대출잔액(천원) | 계좌계상일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홍길동   | 2014-12-31 | 국민은행   | 332233-32-332233 | 자유입출금통장  | 3,900    | 0        | 2008-07-01 |
| 홍길동   | 2014-12-31 | 신한은행   | 4512456891231    |          | 0        | 3,000    | 2009-05-01 |
| 홍길동   | 2014-12-31 | 우체국    | 4123452145214    | 올커비일치로   | 6,400    | 0        | 2011-01-01 |
| 홍길동   | 2014-12-31 | NH농협은행 | 110-00-145632    | 생략금      | 15,000   | 0        | 2012-03-01 |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부동산(토지)

화면보기

| 회원구성 | 본인정보수경 | 권속정보수경 | 친족추가 | 종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환용입력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철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유의사항

- 이전 신고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낮을 경우 현가액을 유지합니다.
-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**실거래 가격**으로 신고하되,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.  
※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'정부부동산 정보알리미 열람'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**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,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리하여 신고**합니다.
- 공동소유 부동산은 '면적'과 '평가액' 소유자분을 신고합니다. (예 : 전세 〇〇㎡중 〇〇㎡)

#### 신고요령

- 권리자, 권리종류, 소재지, 지목, 면적, 가액, 실거래액, 변동사유를 입력합니다.
- 평가금액은 평가액 입력란을 클릭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- 면적의 증감없이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을 신고합니다.
- 공동소유 부동산인 경우 공유자분을 선택하고 전세면적과 지분면적을 입력한 후 지분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을 입력합니다.
- 가액 산정 방법

토지

시·군·구에서 산정한 '개별공시지가'에 면적을 곱하여 가제  
(국토교통부 홈페이지 '정부부동산 정보알리미 열람'에서 확인 가능)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상세보기

#### 토지 (소유권 · 지상권 · 전세권 · 분양권)

##### ④ 유의사항

- ★ 는 필수 입력사항 입니다.
- ※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4년 12월 31일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토지의 소재지는 소유권 등 권리 확인을 위해 지번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가액이나, 연액 변동시에는 체크없이 변동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☐ 소유권 **상설** ☐ 불청구역제한변경(불청구역 제한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의 경우에만 체크를 하십시오.) ☐ 오가장정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관계   | 본인                    |
| 권리자  | 홍길동                   |
| 권리종류 | 소유권                   |
| 소재지  |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해오리 10번지 |
| 지목   | 임야                    |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부동산(건물)

화면보기

| 회원구성 | 본인정보수경 | 권속정보수경 | 친족추가 | 종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환용입력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철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□ 유의사항

- 이전 신고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낮을 경우 현가액을 유지합니다.
-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**실거래가격**으로 신고하되,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.  
※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'정부부동산 정보알리미 열람'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형식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,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리하여 신고합니다.
- 면적의 증감 없이 순수하게 **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은 신고 대상**입니다.

#### □ 신고요령

- 매도, 증여,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체크합니다.
- 오기정정에 체크시 건물소재지의 권리종류, 소재지, 종류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**면적은 m<sup>2</sup>(1평은 3.3m<sup>2</sup>), 금액은 천원 단위로 입력합니다.**
-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의 관리형태를 '변동사유'란에 기재합니다.
- 공동소유 부동산인 경우 공유자분을 선택하고 전체 건물면적과 전체 대지면적을 입력하고 해당 지분면적을 입력한 후 해당하는 가액을 입력합니다.

더보기 >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상세보기

#### 건물 (소유권 · 전세(임차)권 · 분양권)

##### ① 유의사항

- ★ 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.
- ※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4년 12월 31일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건물의 소재지는 소유권 등 권리 확인을 위해 지번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

※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소유(전세)권 성립 ☐ 행정구역재편변경(행정구역 재편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의 경우에만 체크를 하십시오.) ☐ 오기장정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관계      | 존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권리자     | 홍길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권리종류    | 소유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재지     |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9번지 대영빌리언아파트 110동 1101호 |
| 종류 및 용도 | 아파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부동산(건물)

|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화면구성 | 본인정보수경 | 권속정보수경 | 친족추가 | 종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환용입력 |
| 예금보험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□ 신고요령

##### ▪ 가액산정 방법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아파트 등 공동주택         | · 부동산알리미 홈페이지(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)    |
| 단독주택 등 공시가격이 있는 건물 | ·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관련 부서에 가액조회    |
| 그 외 건물             | · 토지의 가액(개발공시지가 × 면적) + 건물의 과표 |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부동산에 관한 규정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, 건설기계, 선박 및 항공기

| 회원구성 | 본인정보수경 | 권속정보수경 | 친족추가 | 종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활용입력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형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□ 유의사항

- 광업권·어업권은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을 신고합니다.
- 자동차는 매매등 **거래시 실거래가격**으로 신고하고, 보유시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, 시가표준액(지방세법 제80조)등의 순으로 가액을 변동 신고합니다.
- 리스자동차는 본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리스로 인한 채권, 채무는 신고대상입니다.  
※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, 리스잔여대금은 채무란에 신고합니다.

#### □ 신고요령

- 권리자, 권리종류, 제적연도(년식), 차명(자동차명), 배기량(CC), 차량등록번호, 신규(아전)등기일, 소유여부, 취득가액,변동사유를 입력합니다.  
※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차량번호 수정 신고
- 매도,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체크합니다.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금융정보활용입력방법

| 회면구성 | 본인정보수정 | 권속정보수정 | 친족추가 | 종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활용입력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통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□ 유의사항

- 금융정보/부동산정보 열람 가능 기간 : 2015.1.15 ~ 2.28 (금융정보 검증기간 : 2015.1.15~1.20)
- 금융정보 활용 입력 가능 기간 : 2015.1.21 ~ 2.28
-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(불일치자료) 중 종전 신고자료는 직접연결하기, 일치자료찾기, 직접변동신고, 신규항목 추가 등의 작업을 통해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.
  - ※ 금융정보활용입력은 참고 자료입니다. 재산신고 책임은 등록의무자에게 있으므로 금융정보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  - ※ 변동신고된 항목(일치자료)과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(불일치자료)의 의미
    - 변동신고된 항목(일치자료)이란, 종전 신고한 금융정보와 금번 금융기관에서 조회된 자료를 비교하여 관계, 소유자, 금융기관,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일치한 내역을 의미합니다.
    -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(불일치자료)이란, 조회된 정보 중 일치자료 이외의 자료입니다.

더보기 >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금융정보활용입력방법

신고요령 동영상 다운로드 화면보기

|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회면구성 | 본인정보수경 | 권속정보수경 | 친족추가 | 종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활용입력 |
| 예금보형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신고요령

- 변동신고된 항목(일치자료)
    - 변동신고된 항목(일치자료) 중 선택된 일부를 일치 해제하려면 **선택항목 일치해제** 버튼을 클릭합니다.
  -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(불일치자료)
    - 종전신고자료와 금융기관 제공자료가 사실상 동일한 계좌(예, 계좌번호 한자리 상이 등)로 일치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양쪽 해당 항목을 선택 후 **적립 연동하기** 버튼을 클릭합니다.
    - 종전신고자료 중 해약 등으로 금융기관 제공자료에 없는 계좌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종전신고계좌를 선택 후 **적립 변동신고** 버튼을 클릭하여 해약한 경우는 해약처리, 계속 보유중인 경우는 보유금액을 정정 합니다. (해약된 계좌를 해약체크 하지 않고, 금액만 정정할 경우 과다신고 발생 합니다)
    - 종전신고자료 및 금융기관 제공자료에는 없지만 실제 보유한 계좌가 있는 경우는 **신규항목 추가**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합니다.
    - 신규로 제공된 금융기관 자료는 해당계좌를 선택 후 **제공자료 추가신고** 버튼을 클릭합니다. (단, 0원인 계좌는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)
- ※ 0원인 계좌를 제외한, 금융기관 제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"누락"이 발생함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상세보기

변동신고원 항목(필치자료) 5건
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관계 | 소유자 | 금융기관     | 계좌번호          | 해금종류        | 이전신고액  | 금원신고액  | 제정일자       | 만기일자       | 특이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본인 | 홍길동 | 우체국      | 4123452145214 | 출처비입자료      | 6,400  | 6,400  | 2011-01-01 | 2019-01-01 |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본인 | 홍길동 | 상설외대협상보험 | 514214562145  | 연금보험        | 5,000  | 5,000  | 2007-10-03 |            |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장남 | 홍영식 | 우리은행(국내) | 1-111-1111    | 1억만들기절기예... | 15,000 | 15,000 | 2006-05-08 | 2014-09-19 |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장녀 | 홍영희 | 국민은행     | 201-21245-123 | 자유적금        | 2,000  | 2,000  | 2010-10-10 | 2015-10-10 |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장녀 | 홍영희 | 국민은행     | 201-22314-124 | 성약저축        | 13,000 | 13,000 | 2009-02-18 | 2019-02-18 |      |

선택항목 설치하기

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(불필치자료) 3건

외국 연금하기, 직접 변동신고, 신규항목 추가

2 3 4

종전신고자료(3건)

|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| 번호 | 소유자 | 금융기관 | 계좌번호             | 해금종류    | 신고금액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1  | 홍길동 | 국민은행 | 223322-23-223322 | 자유입출금통장 | 5,100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2  | 홍길동 | 농협은행 | 455041-11-111    | 자립비착금   | 22,100 |

금융기관 제공자료 10건

5 제공자료 추가신고

|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| 번호 | 소유자 | 금융기관     | 계좌번호         | 해금종류 | 조회금액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2  | 홍길동 | 외환은행(국내) | 666666666666 | 정기예금 | 1,700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3  | 홍길동 | 농협은행     | 555555555555 | 정기예금 | 15,000 |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 예금(보험·수익증권·펀드·CD·투자자 예탁금 포함)

화면보기

| 회면구성 | 본인정보수경 | 권속정보수경 | 친족추가 | 총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활용입력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험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 □ 유의사항

-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합니다.  
※**봉급에서 자동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,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예금 누락 주의**  
※**보험약관대출은 채무항목에 신고(소유자별 모든 채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)**
- 수익증권(펀드 등)의 경우 등기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신고합니다.
-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등기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‘+’이면 ‘예금’란에, ‘-’이면 ‘채무’항목에 신고합니다.
- 순수보장성보험과 ‘부활불능’된 보험은 신고하지 않습니다.  
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, 중도인출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합니다.

## □ 신고요령

- 사전조회된 금융정보 연계를 통해 기존 재산 변경 및 신규 추가를 처리하는 경우 총괄표작성에서 **금융정보활용입력**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소유자, 예탁기관, 예금종류, 계좌번호, 개설일자, 만기일자, 보유액, 특이사항을 입력합니다.
- 변동된 원 보유액을 입력하면, 증가/감소액은 자동 계산됩니다.
- 변동사유는 계좌별 증감액이 아닌 총금액의 증감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합니다.  
※ 재산등록총괄표의 예금항목 **변동사유기대** 버튼 클릭
- 예금을 해약했을 경우 **해약**에 체크 후 **특이사항**을 입력(0원과 해약은 다름)합니다.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상세보기

#### 예금·보험 등

##### ① 유의사항

★ 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

※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4년 12월 31일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
☐ 권리발생변경(해약기권, 해금종류, 계좌번호가 변경할 경우에만 체크를 하십시오.) **1**

|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|
| 관계   | 본인            |
| 소유자  | 홍길동           |
| 해약기권 | 불합응분          |
| 해금종류 | 자립해약금         |
| 계좌번호 | 455041-11-111 |

☐ 폐 약(※ 선택된 예금(보험)계좌를 폐약한 경우 체크 하십시오.) **3**

▲ 보유액

★ 원 보유액

증가액

감소액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유가증권

| 회원구성 | 본인정보수경      | 가족정보수경 | 친족추가 | 종교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활용입력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합 | <b>유가증권</b>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유의사항

-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합니다.  
※ 이전 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, 이후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모든 증권지 수량 및 가액을 신고
- 신규취득하거나 이전에 신고한 증권지 보유수량 및 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합니다.  
※ 금융투자상품 중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**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신고** 하고, 같은 법 제18항제1항에 따른 **투자신탁의 수익증권(펀드등)**은 예금 항목에 신고
-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'주식거래내역서'를 등록기관에 별도 제출합니다.

- ※ 주식거래내역서(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) 제출
  - 공개대상자는 신고대상기간 중 모든 주식거래내역을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(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)
  - 주식거래내역서에는 위탁계좌번호, 주식거래일, 종목, 수량, 실거래액 등이 포함되어야 함
- ※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주식백지신탁 체결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(공직자윤리법제14조제4항)

-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(스톡옵션)도 신고대상입니다.

더보기 >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 유가증권

화면보기

| 화면구성 | 본인정보수정      | 권속정보수정 | 친족추가 | 총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활용입력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형 | <b>유가증권</b>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 유의사항

- 사전조회된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재산 변경 및 신규 추가를 처리하는 경우 총괄표작성에서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소유자, 권리종류, 예탁기관, 계좌번호, 발행인, 종목코드, 수량, 가액, 특이사항을 입력합니다.
- 상장주식의 경우는 반드시 '종목코드'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변동된 주식수량 및 현금 보유액을 입력하면 증가/감소량은 자동입력됩니다.
- 현금 보유액란 앞에 '계산하기'를 클릭하면 주식시세를 계산하는 창이 나타나고 주당 주식시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계산됩니다.
-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했을 경우 전량매도에 체크 후 특이사항을 입력합니다.
-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재산등록총괄표의 증감항목 변동사유기재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합니다.
- 등록기준일 이전 주식배자산탁계약 체결 후 처음 신고 시 '증권의 종류'란에 백지신탁으로 기재하고, '특이사항'란에 신탁일자, 신탁회사를 기재합니다.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상세보기



#### 유가증권 (주식 · 국채 · 공채 · 회사채 · 백지신탁 · 주식매수선택권 등)

##### ① 유의사항

★ 는 필수 입력사항 입니다

※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4년 12월 31일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|
| 소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홍길동           |
| 권리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장주식          |
| 배당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NH투자증권        |
|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0-00-145632 |
| 발행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삼성증권          |
| 종목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0915  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량배도 (※ 선택된 주식을 전량 배당한 경우 체크 하십시오.) |               |

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☐ 채권

🔍 화면보기

| 회면구성 | 본인정보수경 | 권속정보수경    | 친족추가 | 종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환용입력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혈 | 유가증권   | <b>채권</b>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☐ 유의사항

-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합니다.
- 타인의 주택·점포 등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(임차권)은 채권항목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항목에 등록합니다.

#### ☐ 신고요령

- 채권자, 채권액, 발생일자, 만기일자, 채무자, 채무자주소, 전화번호, 변동사유를 입력합니다.
- 채무자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, **도로명 주소입력기**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.
- 보유채권을 전액환수 했을 경우 전액환수에 체크 후 변동사유(사유, 자금흐름 등)를 입력합니다.
- 발생사유, 채무자와의 관계, 자금출처,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.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상세보기

#### 사인간 채권

##### ① 유의사항

★ 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.

※ 모든 정보는 **등록기준일인 2014년 12월 31일 시점**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채무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채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홍길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액환수(※ 선택한 채권 전액을 환수한 경우 체크 하십시오.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★ 채권액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 채권액<br>75,000 (천원)<br>[실청오백만]원             | ★ 새 채권액<br>75,000 (천원)<br>[실청오백만]원 | 증가액<br>0 (천원) | 감소액<br>0 (천원) |
| 발생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3-07-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★ 만기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5-07-29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선택"/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채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김미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☐ 채무

🔍 화면보기

| 회원구성 | 본인정보수경 | 권속정보수경 | 친족추가      | 종교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 | 금융정보활용입력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험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<b>채무</b>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제 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☐ 유의사항

-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합니다.
- 주택·아파트·상가·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(임대)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합니다.
-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등기기준일 현재의 할부금 잔액을 확인하여 채무란에 신고합니다.
- 증권사, 카드사,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채무를 빠짐없이 신고합니다.

#### ☐ 신고요령

- 채무자, 채무종류, 채무액, 발생일자, 만기일자, 변동사유를 입력합니다.
- 채무를 잔액 상한하였을 경우 전액상환에 체크 후 변동사유(사유, 자금흐름)를 입력합니다.
- 변동사유란에는 발생사유, 채권자와의 관계(사민간의 경우), 사용처,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.
- 보유채무액 변동시 그 사유, 자금흐름 등을 기재합니다.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 상세보기



## 채무

## ① 유의사항

- ★ 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
- ※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4년 12월 31일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사원간채권이나 기타의 채권자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|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|
| 관계   | 본인            |
| 채무자  | 홍길동           |
| 채무종류 | 금융기관채무        |
| 대출기관 | 신한은행          |
| 계좌번호 | 4512456851231 |

☐ 전액상환(※ 선택권 채무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 체크 하십시오.)

|       | 원 채무액          | ★ 원 채무액        | 증가액 | 감소액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가액 변경 | 6,000 (54,901) | 3,000 (25,901) |     | 3,000 (25,901) |

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기타 재산항목 신고방법

| 회면구성 | 본인정보수경 | 권속정보수경 | 친족추가 | 종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환용입력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형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□ 현금

-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합니다.  
※현금보관사유(사용용도), 자금출처, 증감시 변동사유 등 기재

#### □ 금 및 백금(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)/보석류

-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합니다.  
※보석류에 부착되어 있는 금 및 백금은 보석류 항목에 신고
-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, 매도한 경우 이전가격을 감소가격으로 신고하고 '실거래가격'란에 매도가격을 기재합니다.  
※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등록기준일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변동사항 신고
- 증여·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록기준일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신고합니다.
- 소유자, 종류(금·백금), 합량, 보유량, 실거래액, 변동사유를 입력합니다.

#### □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

- 비영리법인에 새로 출연하거나 이미 신고한 비영리법인 출연재산, 보유직위, 법인명칭, 대표자 등이 변동된 경우 신고합니다.

더보기 >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기타 재산항목 신고방법

| 화면구성 | 본인정보수경 | 권속정보수경 | 친족추가 | 홍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환용입력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월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□ 공동품 및 예술품

-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보석류, 공동품 및 예술품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신고한 보석류 등을 매도한 경우 신고합니다.
-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, 매도한 경우 이전 가격을 감소가격으로 신고하고 '실거래가격'란에 매도가격을 기재합니다.
- 증여·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문가의 평가액으로 신고합니다.  
※ 매도 등 실거래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전 가격 유지, 다만 가격을 '0'으로 입력한 경우 반드시 가격을 신고
- 소유자, 종류(도자기·회화), 품명, 크기, 작가, 제작연대, 실거래액, 변동사유를 입력합니다.

#### □ 지식재산권

-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, 이미 신고한 지식재산권이 양도 또는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신고합니다.
- 소유자, 종류, 권리명세, 소득금액, 변동사유를 입력합니다.
- 지식재산권이 소멸한 경우 소멸에 체크한 후 변동사유를 입력합니다.

더보기 >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기타 재산항목 신고방법

| 화면구성 | 본인정보수경 | 권속정보수경 | 친족추가 | 종교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환용입력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통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□ 회원권

- 골프코스, 콘도미니엄 등의 종류를 불문하고 500만원이상의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신고한 회원권을 매도한 경우 신고합니다.  
※ 골프회원권은 계속 보유시 지치단체에 시가표준액을 문의하여 변동사항 신고  
※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
-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, 보유회원권을 매도했을 경우 매도에 체크한 후 '실거래가격' 란에 매도가격 및 변동사유를 입력합니다.
- 증여·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합니다.
- 소유자, 발행인, 종류, 회원권번호, 가액, 실거래액, 변동사유를 입력합니다.
- 소재지가 변경됐을 경우, (도로명 주소입력)를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.
- 골프회원권은 순수하게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.

#### □ 합명·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

- 합명·합자유한회사에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신고한 회사의 출자가액, 출자지분 및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 신고합니다.  
※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도 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신고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신고내용 확인가능

| 회면구성 | 본인정보수경 | 권속정보수경 | 친족추가 | 총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환용입력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월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 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□ 확인요령

- 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시스템적으로 비교하여 누락 및 실수할 수 있는 내용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입니다.
  - ※ 이 메뉴 내용은 무조건 신고대상은 아니나, 의무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임
-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확인
  -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표시됨
  - ↳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하고, 관사가숙사·친척집 거주월세 등 일 경우 해당 사실을 친족정보수경의 '관리형태'란에 기재
  - ※ 거주지 주소체계(도로명주소)와 소재지 주소체계(지번주소)의 법정동,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
- 소유권물 임대권 미신고 확인
  - 신고된 소유건물에 거주하는 등록의무자 또는 친족이 없으며, '채무'란에 '건물임대채무'도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표시됨
  - ↳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하고, 해당건물이 공실이거나 무상임대중인 경우 해당사실을 총괄표상 해당건물의 '변동사유'란에 기재
  - ※ 거주지 주소체계(도로명주소)와 소재지 주소체계(지번주소)의 법정동,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

더보기 >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신고내용 확인가능

| 화면구성 | 본인정보수경 | 권속정보수경 | 친족 추가 | 총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 | 금융정보활용입력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혈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 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제 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□ 확인요령

- 소유토지 미신고 확인
  - 임대채무로 신고한 토지가 토지항목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표시됨.
  - ☞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
- 소유건물 미신고 확인
  - 임대채무로 신고한 건물이 건물항목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표시됨.
  - ☞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
- 금융정보 미신고 확인
  - '금융정보 활용입력' 기능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표시됨.
  - ☞ 누락한 경우에는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통해 추가
- 고지거부 재심사지 미신청 확인
  - 고지거부 허가받은 의무자 중 재심사 대상자로서 신청하지 않은 친족이 있는 경우에 표시됨.
  - ☞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가능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변동요약서 작성

| 회원구성 | 본인정보수경 | 권속정보수경 | 친족추가 | 총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 | 금융정보활용입력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월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 요약서  | 공개 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□ 유의사항

-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및 순재산 증감사유를 상세히 기재합니다.  
※ 총괄표(가액으로 계산)와 변동요약서(실거래액이 있는 경우 실거래액으로 계산)의 순재산 증감액은 계산방식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를 수 있음
- 재산변동기간 동안의 본인소득, 본인 외 소득자 수 및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.  
※ ① 2015년 정기변동신고자 : '14.1.1 ~ 12.31 / ② 최초재등록신고자 : 이전 신고 기준일 이후 ~ '14. 12. 31  
※ 소득은 반드시 **천원 단위**, 세전 금액으로 기재

#### □ 신고요령

- 신고자가 재산등록 총괄표에 입력한 재산내역의 금액변동을 확인합니다.
- 순재산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 증감에 대해 대표사유를 순재산 증가 또는 감소 사유에 입력합니다.
- 소득대비 순재산의 증감폭이 큰 경우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총괄표에서 재확인합니다.  
※ 매매한 부동산, 시인간채권, 시인간채무, 분양권, 전세권 소득금액 등의 누락과다 확인

더보기 >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변동요약서 작성

|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화면구성 | 본인정보수경 | 권속정보수경 | 친족추가 | 종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 | 금융정보활용입력 |
| 예금보월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 요약서  | 공개 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□ 신고요령

##### ■ 변동요약서 작성예시

- 예1) 소득이 6천만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6천만원인 경우 증가 사유
- 수입 : 급여 5천만원, 임대소득 1천만원, 펀드평가액 1천만원, 상속 3천만원
  - 지출 : 자녀교육비 1천만원, 생활비 3천만원
- 예2) 소득이 1억원(본인 6천만원, 배우자 4천만원)인데 순재산 감소 2천만원인 경우 감소 사유
- 자녀유학비(미국) 4천만원, 부모요양비 3천만원, 주택담보이자 1천만원, 펀드손실 1천만원, 생활비 3천만원
- ※ 생활비 사용내역은 연말정산서 등 참조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☐ 공개목록 작성(공개자에 한함)

🔍 화면보기

| 외면구성 | 본인정보수경 | 권속정보수경 | 친족추가 | 종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  | 금융정보활용입력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예금보철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가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 목록 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☐ 유의사항

- 공개목록은 신고서 제출 후 관보(공보)에 게재되므로, **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.**
- 소속 및 직위는 등록기준일('14.12.31) 기준으로 작성하고, 소속은 소속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합니다.
- 고지거부하거나 등록제한한 친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변동사유란에 기재합니다.

#### ☐ 신고요령

- **공개목록 작성 중 내용이 틀린 경우는 [공개목록 다시 가져오기] 버튼을 클릭하여 공개목록을 초기화합니다.**
- 변동사유란에는 증감재산의 종류별 증감사유를 기재합니다.
- 주택, 상가, 오피스텔 등은 번지와 동호수 가제를 생략합니다.  
 ※ 예) 단독주택 : 00시 00동 대지 00㎡ 건물 00㎡  
 아파트 : 00시 00동 00아파트 건물 00㎡
- 자동차는 연식, 차종, 배기량을 기재하고, 차량번호와 차량 제조회사는 가제를 생략합니다.  
 ※ 예) 2007년식 소나타 배기량(2000cc)
- 시간간 채권채무자의 주소, 설명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- 건물임대채무의 경우, 임차인 설명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상세보기

#### 05 공개목록작성

신고요령

FAQ

1

2

3 공개목록 다시 가져오기

출력

##### ① 유의사항

- ※ 공개목록에 작성한 내용은 관보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.
- ※ 민통사유관에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##### ② 작성방법

- ※ 공개목록 비교란의 초기 내용은 출감후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.
- ※ 내용은 확인 후 수정 가능하며, 출감후 내용을 건네 다시 가져오려면 "공개목록 다시 가져오기"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.

(단위: 천원)

| 본인과의 관계   | 재산의 종류 |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| 종전가액    | 현당액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현재가액      | ★ 변동사유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증가액<br>(없거나가액) | 감소액<br>(없거나가액) |           |        |
| ▶ 토지 (소계)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150,000 | 5,050,000      | 150,000        | 5,050,000 |        |

## 3-2. 재산항목별 작성방법

### 신고서 제출

화면보기

|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화면구성 | 본인정보수정 | 권속정보수정 | 친족추가 | 종괄표작성 | 부동산(토지)  | 부동산(건물) | 자동차등   | 금융정보환용입력 |
| 예금보혈 | 유가증권   | 채권     | 채무   | 기타재산  | 신고내용확인기능 | 변동요약서   | 공개목록작성 | 신고서제출    |

#### 유의사항

- 고지거부 허가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
- 신고서를 수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[제출]완료해야 합니다.

#### 신고요령

- 재산등록신고서,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.
- 신고서조회 메뉴에서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# 3-3. 용어의 이해

| 용어          |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개별공시지가      | 정부가 정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제장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<br>개별 필지에 대해 산정한 가격<br>※ 정부부동산정보 알라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건물임대채무      | 건물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전월세 보증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지가부        | 재산등록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의 독립적 생계유지 등 법이 허용한 사유로<br>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<br>(허가사유 : 독립적 생계유지 가능 또는 타인에 의한 부양)<br>※ 최초 재산등록 및 정가재산반등신고 때 신청가능 |
| 공유지분        | 재산항목에서 공유물에 대해 각 공유지가 소유한 비율을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준시가        | 「소득세법」에 의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상속, 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으로 공동주택 기준시가, 건물 기준시가(상가 일반주택 기준시가), 골프 회원권 기준시가가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도로명주소 (새주소) |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새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등록기준일       | 재산신고서 작성시 신고기준일로서 통상신고서 작성의무가 발생한 날짜(예 : 인사변동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변동요약서       | 이전 신고와 금번 신고를 비교하여 15개 재산종류별 현금의 증감에 대한 변동흐름을 보여주는 요약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3-3. 용어의 이해

| 용어    |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완신고서 | 재산심사결과 그 결정이 보완명령 이상인 등록의무자가 해당 신고내용을 보완·정정하여 제출해야하는 재산신고서                  |
| 분양권   | 새로 건설되는 주택등에 대해 준공시 입주자의 자격을 갖는 권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비상장주식 | 증권거래소의 거래허가(상장)를 받지 못해 증권시장이 아닌 정외시장 또는 제3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                   |
| 비영리법인 | 학술·종교·자선·사교 기타 경제적 이익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인간채권 | 금융기관등이 아닌 개인적으로 빌려준 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장주식  |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주식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선물신고  |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직·간접적으로 외국(외국인)으로부터 받은 원화 환산 10만원이상의 선물을 신고하는 제도 |
| 소명서   | 재산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 잘못 신고한 내용에 대해 의무자가 타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는 문서                      |
| 소유권   | 물건(건물, 부동산, 자동차 등)을 전면적·일반적으로 지배·소유하는 권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고유예  |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해야하는 등록의무자가 국외근무 등 법에서 허가한 사유로 재산신고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제도                 |
| 실거래가액 | 실제 물건을 시거나 팔 때 거래되는 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3-3. 용어의 이해

| 용어                |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유가증권              |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등의 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, 즉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로 단순히 '증권'이라고도 함<br>예) 주식·국채·공채·회사채·주식매수선택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무면제              | 인사발령 등으로 재산등록의 의무가 면제가 된 경우<br>예) 갑사담당관실에서 인사가확실로 전보(재산신고 의무가 없는 부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임대권               |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 계약에서 가지는 권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임차권               | 계약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식매수선택권<br>(스톡옵션) | 주식회사가 일정지분의 회사주식을 특별히 유리한 가격이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직계존비속             | 조상으로부터 본인에게 이르는 혈족인 직계존속과 본인으로부터 후대에 이르는 혈족인 직계비속을 총칭<br>- 직계존속 : 부모, 조부모, 증조부모, 고조부모<br>- 직계비속 : 아들, 딸, 손자, 손녀, 증손자녀, 고손자녀<br>※ 직계존속의 외조부모, 외증조부모, 외고조부모는 제외되며, 시부모와 며느리, 정인, 정모와 사위간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 |

### 3-3. 용어의 이해

| 용어           |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상권          | 타인의 토지에 대한 이용료(지료)를 지불하고 간혹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(예 : 가옥, 교량, 연못, 광고탑, 전주 등)        |
| 지식재산권        | 특허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, 저작권 등 지식활동을 통해 보유한 권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목           |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한 구분<br>(예 : 전, 답, 임야, 도로 등 축산수로조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서 정한 구분)    |
| 채권           | 정부, 공공기관, 주식회사 등이 일반 대중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<br>(예 : 국채, 공채, 회사채 등)    |
| 채무           | 법인 또는 타인에 대해 갚아야 하는 금전<br>- 금융채무 :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<br>- 임대채무 : 부동산을 임대할 때 받은 보증금           |
| 출연재산         | 비영리법인 등 공익제단에 출연(기부 또는 증여)한 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출자지분         | 법인의 경영에 참여를 위해 투자한 자본으로 재산노무신용을 법인 또는 조합에 제공하여 얻게되는 회사의 지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현명·현자유한회사    | 상법에 정의된 회사의 운영방법이나 구성원의 연대책임범위에 따라 구분된 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행정전자서명 (GPK) | 공무원 신원확인, 전자문서 송수신시 위변조 방지 등을 보장하는 정부차원의 PKI 인증체계<br>※ PEti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필요 |